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함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964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8월 11일

발 의 자: 성함제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규남, 김성준,
김용호, 김원태, 남창진,
민병주, 박승진, 박칠성,
송도호, 오금란, 유만희,
이상훈, 이영실, 이원형,
이종태, 전병주, 정준호
의원(18명)

1. 제안이유

- 서울시의 건설 신기술 활용 수준은 해외 주요 도시와 비교하여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제도적 지원을 통해 도입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임.
- 또한 현행 조례가 신기술 활용을 장려하고는 있으나 실제 적용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규정이 부족한 실정임.
- 이에 공사 설계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신기술 적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발주청은 사전 검토 결과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그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신기술을 설계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하여 신기술 활용의 실질적인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건설공사의 계약 체결 시 발주청은 공사계약서에 사용되는 신기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신기술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를 추가함 (안 제10조제1항).

- 나.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제고와 신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연간 발주 공사비의 100분의 4 이상에 신기술을 적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함 (안 제10조제2항).
- 다. 발주청이 공사를 시행할 때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신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시공성과 경제성 등 우수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 (안 제10조의2제1항).
- 라. 발주청은 사전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해당 신기술이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함 (안 제10조의2제2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반영하고”를 “반영해야 하며”로, “명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신기술개발자”라 한다)”를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건설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신기술개발자”라 한다)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신기술의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 및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하여 연간 발주 공사비의 100분의 4 이상에 신기술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사전검토의무) ① 발주청은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신기술을 사전에 검토하고 적용가능성을 분석하여 보고토록 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사전 검토 결과를 토대로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다고 판단하

는 경우 해당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설계반영의무) 발주청은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하고,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신기술개발자"라 한다)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설계반영의무) ① ----- ----- ----- ----- 반영해야 하며, ----- -----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건설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신기술개발자"라 한다)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신기술의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
<신 설>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 및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하여 연간 발주 공사비의 100분의 4 이상에 신기술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2(사전검토의무) ① 발주청은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신기술을 사전에 검토하고 적용가능성을 분석하여 보고토록

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사전 검토 결과를 토대로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사 설계시 우수한 신기술을 사전에 검토·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신기술 활용의 실질적인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소관부서(건설기술정책관 기술심사담당관)에서 행정안전부 예규¹⁾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신기술을 선정하고 신기술·특허 적용 건설공사 현황과 실적 관리를 통해 관련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선희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이설화

☎ 02-2180-7952

e-mail : sseol789@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제1장 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